

경상남도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

▶ 신고기간 12월 19일 ~ 3월 31일



신고해주세요

▶ **신고상담** 211-2292, 2295 (경상남도 에너지산업과)

▶ **신고대상**은 이렇습니다!

- 석유제품 과대하게 구입하거나 보유
- 석유정제(수입)업자, 판매업자가 판매기피 또는 특정업체 과다공급
- (소비자) 주유소가 판매 기피



경상남도
GYEONGNAM